



죽음의 선고



이준상

본 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·의료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해본다.
이번 호에서는 “뇌사인정”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

인간개체의 죽음으로 인한 법적 및 사회적 종말처리는 의사의 죽음의 선고로 시작된다. 이 선고는 다른 어떤 직종도 할 수 없으며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사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.

그렇다면 인간의 죽음을 무엇을 기준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인가? 심·폐기능설에 따르면 심장과 폐운동 및 인체가 지니는 각종 반사운동의 영구적인 정지를 죽음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. 임상에서 어떤 개체의 죽음을 선고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다. 따라서 심·폐운동이 정지된 후 30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공적인 소생술에 의하여도 그 운동의 정지가 불가역적이라면 죽음을 선고하게 된다.

뇌사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「뇌간을 포함하는 전체 뇌의 불가역적 기능정지」라고 정의되며,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. 여기서 말하는 것은 뇌의 주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의식·감각 등의 뇌 고유기능과 신체 각부분을 통합하는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것을 의미하며, 반드시 뇌를 구성하는 개개세포의 대사·기타 생활기능이 전적으로 소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
보건사회부나 대한의학협회의 뇌사입법 방침과 추진계획은 심각한 일을 너무나 안

식물인간과
뇌사인간이 구별된다
하더라도
뇌사문제에는
많은 의구심이
따른다



이하게, 또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한 결과
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.

뇌사를 인정하려는 사람은 국민들이 식
물상태와 뇌사상태를 혼돈하기 때문에 뇌
사거부반응이 있다고 한다. 설령 식물인간
과 뇌사인간이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뇌사
문제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.

그중 으뜸은 역시 뇌사판정의 잘못이다.
오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외
국례에서 보면 그 나라의 뇌사판정 기준에
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뇌사판정이었는데
도 시체가 살아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건
이 있다.

이런 경우 예정대로 그 환자의 장기를
떼어 냈다면 틀림없는 살인이 되었을 것이
다. 또 뇌사상태가 되면 길어도 14일이내
에는 온몸이 죽는다고 하지만 일본에서의
어떤 경우 뇌사체를 54일간 살려둔 공인기
록을 갖고 있다. 이를 해부하면 생체해부
나 다행이 없다.

생사람의 일부인 장기가 돈으로 거래되
어 그 콩팥값이 몇천만원을 호가하며, 큰
병원 근처에 이를 중개하는 조직이 있다는
말은 혼하다. 뇌사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도

이식용 장기가 모자라고 이식수술비용이
비싸서, 가난한 사람은 장기이식을 좀처럼
받을 수가 없는 현실은 어떻게 보아야 할
까.

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장기를 떼어내,
돈 있는 사람을 살리는 꼴이 되고, 제3세
계를 수출국으로 하는 국제간의 장기무역
이 성립되는 현실이 우리를 당혹케 한다.

뇌사를 인정하려는 사람은 각막이나 신
장(콩팥)과 같이 2개의 장기중 하나를 제
공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. 이는 죽음과 삶
을 구별 못하는 처사이다. 뇌사를 인정함
은 죽음인데 어떻게 삶과 죽음이란 심각한
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고, 제3자가
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.

외국에서는 뇌사판정 시에 전문적 경험
이 있는 2명이상의 의사가 담당하여야 하
지만 장기이식에 종사하는 의사는 판정자
로서의 참가를 배제하고 있다고 한다. 이
는 무엇을 의미하는가. 장기이식에 종사하
는 의사는 자기가 행할 이식수술에 집착하



의학적으로
뇌사설을 인정하자는
주장은 장기이식의
필요에서 나왔다고
보는데, 이것은
의학적으로만 결정될
성질의 것이
아니라고 본다

다보면 뇌사판단을 그르칠수 있기 때문이
아닐까.

의학적으로 뇌사설을 인정하자는 주장
은 장기이식의 필요에서 나왔다고 보는데
이 문제는 의학적으로만 결정될 성질의 것
이 아니라고 본다. 사람의 생사에 관한 문
제는 법학, 윤리학, 신학적으로도 중요한
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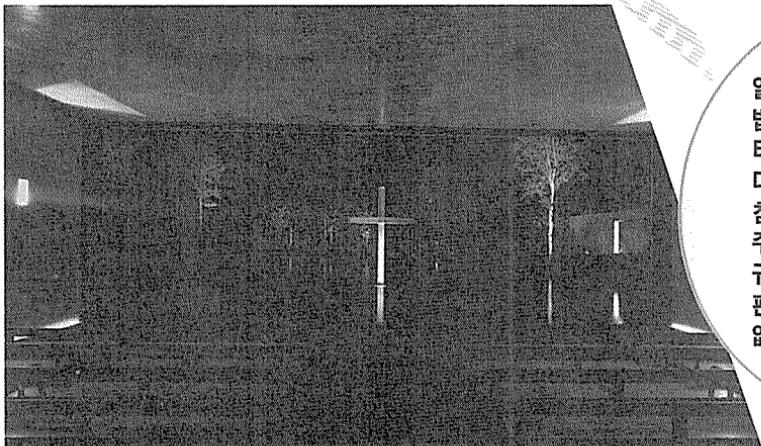
의학에서 장기이식의 발달로 인하여 어
차피 죽어야 할 사람의 장기를 척출하여 환
자에게 이식함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을 구
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나 공리주
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.

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식자와 피
이식자 양자의 생명을 다 잃게되기 때문이
다. 즉 어차피 둘다 죽어야 할 사람이라면
그중 한 사람을 희생시켜 다른 한 사람을 살
리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 맞기 때문이
다.

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부터 바라볼 때 이
른바 뇌사자의 생명권에 관한 법적, 윤리
적, 신학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. 따라
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부터 뇌사설을 인정
하기 어려울 것 같다.

첫째, 사람의 생과 사의 개념은 법률적
으로 확정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뇌사는
그렇지 못하다. 즉 심폐기능이 아직 작동
하는 한 그것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
것은 상식과 사리에 반한다 할 것이다.

둘째, 뇌사상태에 빠져 있는 자는 자기
스스로가 자기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
때문에 피해자의 승락을 받을 수 없다. 법
률은 가족이나 친족의 승락은 물론 본인
자신의 승락이나 촉탁도 생명권에 관한 한



일반적인
법의식으로서는
타인의 생명가치에
대한 처분과
침해의 인상을
주는 결과가 될 때
규범은 생명보호의
편에 서지 않을 수
없다.

인정하지 않는다.

셋째, 생명가치의 대체 불가능성이다. 어느 누구를 위하여 어느 누구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논리적, 윤리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.

넷째, 생존가능성이 있는 자의 생존 목적을 위하여 생존 가능성이 없는 자의 생명을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평등한 독립적 인격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. 어차피 죽을 수 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하여 타인의 존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.

따라서 전문적인 의료인의 판단이나 과학적 지식으로는 사망으로 판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, 일반인의 법의식으로서는 타인의 생명가치에 대한 처분과 침해의 인상을 주는 결과가 될 때 규범은 생명보호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다.

오히려 법은 인간생명의 기본가치가 항상 존중되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이처럼 뇌사설의 일반적인 도입은 현재의 법상태로 불가능하지만, 구체적인 사안에서 예외적인 판단의 가능성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.

뇌사자 스스로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했고, 가족들은 인공적인 심·폐기능만의 연장을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이식 수술에 동의했고, 이 뇌사자의 장기로 이식수술을 급히 받지 않으면 죽어갈 수 밖에 없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 아래 뇌사자의 장기처출이 가능하리라고 본다.

생명의 존중은 법과 윤리에 앞서 있는 객관적 요구이지만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 뇌사자의 장기처출과 장기이식에 의해 충족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한 생명존중의 규범요구와도 충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이때에도 뇌사자의 장기가 돈으로 거래된다면 생명존중의 규범요구와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. [2]

〈필자=고려대 醫事法學연구소장〉